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영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60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 : 윤영희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50명)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직장인,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 ·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· 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.

○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‘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’를 추가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,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5조의 제목을 (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)으로 함(안 제5조의 제목)

나.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함. (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, 청소년 보호법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치료보호 및 사업 등)”을 “(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)”으로 하고, 제1항제2호 중 “안전를”을 “안전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방지을”을 “방지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치료보호 및 사업 등)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5조(------- 안전관리 사업 등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	2. ---------- 안전을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·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 사업	4. ---------- 방지를 ----------
<신 설>	5.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